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 지정·운영〉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58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 지정·운영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진욱의원 등 22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4.
3. 회부연월일 : 2026. 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S인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불량 KS인증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KS인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달기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KS인증·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 지정·운영

개정안은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 지원,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및 취소·정지 업무 지원, 시판품조사·현장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한편(안 제22조의2 신설),

전담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의 임직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1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2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인증기

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의 지원

2.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및 취소·정지 업무의 지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의 지원

4.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관련 정보의 관리

5. 그 밖에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제36조(청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③ (생략)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생략)

<신 설>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청문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4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의2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

2. (생략)	직원 3. (현행 제2호와 같음)
---------	--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개정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기관 지정,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KS 인증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KS 인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불량 KS 인증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KS 인증 및 사후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인증기관 관리,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시판품조사, 인증정보 관리 등 인증 관련 업무가 확대·전문화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정부 중심의 관리체계만으로는 인증 관련 업무의 확대·전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 지정·취소 업무 지원,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지원, 시판품조사·현장조사 지원, 인증 관련 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여 전담기관 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KS 인증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할 경우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KS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의 인증관리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시판품조사, 인증정보 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¹⁾는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

1) 「산업표준화법」

제32조(한국표준협회) ①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3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한국산업표준 및 간행물의 발간·보급과 한국산업표준 실시의 촉진
2. 국제표준·외국표준,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보급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연구·개발·진흥·진단·지도 및 교육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평가
5.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6. 국제표준화 활동의 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영에 관한 조사·연구·교육·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KS 인증심사, 인증 관련 교육 등 인증과 관련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가 기존 협회의 업무와 일부 중첩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향후 전담기관 지정 시 기존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 또는 한국표준협회와 전담기관 간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한국산업표준의 적합성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57